

정 관

(개정 2021.11.22.)

학교법인 동화학원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은 학교법인동화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한다.

1. 동화중학교
2. 동화고등학교

제4조(주소)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34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법인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였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에 규정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경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③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 처리)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②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년간 공개한다.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이사 8명(이사장 1명, 개방이사 2명 포함)
- 2.감사 2명(추천감사 1명 포함)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궐위 등으로 인하여 취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해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하여야 한다.

- ②임기 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한다.
- ④필요시 관할청에 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①법인의 개방이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 2.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 ②필요시 관할청에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안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한다.

-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5(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동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2명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동화중학교 1명, 동화고등학교 2명
-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6(개방이사추천)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상인원의 2배수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추천순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
2.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후보자의 동의서
4. 후보자와 당해학교 및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서
5. 후보자와 당해학교 및 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5 규정을 따른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과반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리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경직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의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 개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에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가증권투자사업
2. 부동산 임대업
3. 기타 상기관련 부대사업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경영하게 되는 경우 그 명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동화학원의 사업소는 법인 주소지에 둔다.

제35조(관리인) ①제32조의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6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의 해산하였을 때의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제38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39조(임용) ①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④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0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한다.

⑤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2항에 의거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의2(기간제교원) ①교원의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의거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의3(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제39조의4(명예퇴직) ①교원의 명예퇴직은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을 준용한다.

②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단,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의5(전형결과와 공개) ①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의한다.

제40조(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9조를 준용하여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휴직의 기간) 휴직의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를 준용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끝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0조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44조(면직의 사유)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44조의2(직위의 해제)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폐지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회의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2.신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교원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4.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5.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6.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교원(학교장 제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인사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의 1/3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4조(세칙) 인사위원회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 인사위원회 세부규정에 의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5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5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관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원 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 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징계의결 요구사항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대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징계의결시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

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63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의 삭제 <개정 91. 9. 30.>

제64조 삭제 <개정 91. 9. 30.>

제65조 삭제 <개정 91. 9. 30.>

제66조 삭제 <개정 91. 9. 30.>

제67조 삭제 <개정 91. 9. 30.>

제68조 삭제 <개정 91. 9. 30.>

제69조 삭제 <개정 91. 9. 30.>

제70조 삭제 <개정 91. 9. 30.>

제71조 삭제 <개정 91. 9. 30.>

제72조 삭제 <개정 91. 9. 30.>

제73조 삭제 <개정 91. 9. 30.>

제74조 삭제 <개정 91. 9. 30.>

제75조 삭제 <개정 91. 9. 30.>

제76조 삭제 <개정 91. 9. 30.>

제77조 삭제 <개정 91. 9. 30.>

제4절 사무직원

제78조(자격)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79조(임용) ①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②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되 신규임용의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기타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한다.

제79조의2(신분보장 및 정년) ①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을 따른다.

③사무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

제79조의3(명예퇴직) ①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단,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의4(공로연수) 사무직원의 공로연수에 관하여는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0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관할교육청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2(장기재직휴가) 사무직원의 장기재직휴가와 학습휴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81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

제82조(신분보장) 삭제 <개정 14. 5. 1.>

제82조의2(준용사항)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학교법인의 근속승진제 운영, 대우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적용한다.

제83조(징계 및 재심 청구) ①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91. 9. 30.>

②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4조(법인 사무조직)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실)을 둔다.

②제1항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고등학교

제85조(교장 등) ①교장1인과 교감2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사무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86조(하부기구) 사무기구에는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5급으로 보한다.

제3절 중학교

제87조(교장 등) ①교장1인과 교감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사무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88조(하부기구) 사무기구에는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6급으로 보한다.

제4절 정원

제89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이 한다.

제89조의2(공로연수로 인한 결원 보충)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로연수하게 된 경우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과 지침(「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90조(목적) 이 8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1조(위원회 설치 범위) 병설학교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92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 한 사항
7.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사항
 -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교원위원회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9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 배수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이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9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9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95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9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01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2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3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04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5조(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조(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조(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08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9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10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 하는 동화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11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동화중·고등학교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13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4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5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6조(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 ②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

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8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9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20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기타

제122조(공고)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2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설립당초의 임원)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이 름	임 기	주 소
이 사 장	이 춘 우	1950. 6. 5 - 54. 6. 4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391
이 사	이 상 철	"	"
이 사	안 병 린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2-4
이 사	홍 성 달	"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207
이 사	이 주 운	1950. 6. 5 - 52. 5. 4	부산시 신창동 1가 18
이 사	호 기 영	"	서울시 종로구 옥연동 77
이 사	박 승 호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618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10급 삭제 및 기능9급 정원조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 보충할 수 있다.

제3조(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다만, 재임 중인 학교장의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위 기간 중 중도해임이 가능하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5항은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2](#)가 적용되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합계	3명
일반직 계	3명
4급(상당)	1명
5급(상당)	1명
8급(상당)	1명

[별표 2] 학교별 일반직 정원 및 배치 기준표

구 분	직종	일반직						비 고	
	직군	행정			관리운영		기술		
	직렬	교육행정			사무운영		시설관리		
학교 구분	직급	5급	6급	7급이하	8급	9급	8급	9급	
고등학교		1	1	1	1	1	1	1	7
중학교			1	1		1	1	1	5
합계		1	2	2	1	2	2	2	12